



##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뉴욕주 이민자 및 거주민을 위한 유용한 세금 정보

조세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쿠오모 주지사의 2011년 행정명령 26호에 대한 사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나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납세자에게 전화 통화시 통역 및 중요 문서 중 일부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판매업체를 위한 판매세 지침서 번역

2017년 2월, 조세부는 판매세 지침서를 스페인어, 아이티 프랑스어, 중국어 번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로 번역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미국인들이 더욱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세부 웹사이트

언어 접근성(Language Access) 준수의 일환으로, 저희 웹사이트를 6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출판물 20여 개 또한 각각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www.tax.ny.gov](http://www.tax.ny.gov)에서 *language(언어)*를 검색하면 됩니다.

### 언론 및 소셜 미디어

조세부는 언론 보도 자료 및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선별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합니다. 추가 정보는 [www.tax.ny.gov](http://www.tax.ny.gov)에서 *press(언론)*를 검색하면 됩니다.

### 통합 콜센터

조세부는 전화 통화시 납세자의 책임 및 활용 가능한 세금 공제, 세금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납세자는 518-453-8137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세금 납부 지원

조세부 무료 전자파일 기능은 안전하며, 세금 환급 접수 시 보다 정확합니다. 소득에 따라, 연방 및 주 소득세 환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세금 환급 준비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FreeFile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시려면 [www.tax.ny.gov](http://www.tax.ny.gov)에서 *Free File(무료 파일)*을 검색하면 됩니다.

납세자는 저희 활성화된 자가 지원(Facilitated Self Assistance, FSA) 사이트 중 하나를 이용해 무료로 소득세 환급을 준비하고 전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무료로 연방세 및 주세 환급을 준비하고 전자 접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용을 조세부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합니다.

IRS 공인 자원봉사자들은 자원 소득세 지원(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노인 AARP 세금 상담(AARP 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료로 연방세 및 주세 환급을 준비해드립니다.

### 납세자 권리 옹호

납세자가 조세부의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납세자 권리 옹호 사무소(Office of the Taxpayer Rights Advocate)가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하는 등 고질적인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옹호 사무소는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고객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 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EITC 유자격자는 소득세 환급액을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EITC에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노동자를 위한 혜택으로 연방 정부, 뉴욕주, 뉴욕시 공제가 포함됩니다. 자격이 되려면, 체납 세금이 없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ITC 정보는 스페인어, 아이티 프랑스어, 중국어 번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며, 웹사이트 [www.tax.ny.gov](http://www.tax.ny.gov)에서 *EITC*를 검색하면 됩니다.

### 세금 신고자 고용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들은 법을 준수하며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부의 *세금 신고자에 대한 소비자 권리 장전(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Tax Preparers)*은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하며, 웹사이트 [www.tax.ny.gov](http://www.tax.ny.gov)에서 *language(언어)*를 검색하면 불공정한 납세 관행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에 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자에 관한 민원은 조세부에 518-457-0578번으로 전화하거나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조세부는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다루며, 제기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